

**■■■■ Question** 저희 회사에서 일 년에 한번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꼭 휴일을 이용해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.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저희는 어디에서 그 시간의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. 건강진단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. [ 접수번호 : 1673 ]

건강진단 소요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및 휴일의 근로자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, 근로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주는 가능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근무시간 내 실시토록 하고 만일 휴일 실시하였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근로자에게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**■■■■ Question** 현장 현재직으로 근무하다 본사 계약직이 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(현재직을 퇴사하고 새로 본사계약서를 썼을 경우입니다) [ 접수번호 : 5245 ]

현장 채용직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(노동부고시 제2005-32호, 2005.12.5) 별표 2 『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』 항목 1(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)에서 규정하는, 안전순찰 등을 겸하며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한다면, 동 안전보조자가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**■■■■ Question**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의4, 3번 항목에 “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1회 실시하되”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‘특별한 사유’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

1. 시공회사가 작업에 위험을 느끼고 별도로 월2회 방문을 요청하는 것도 특별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
2. 위 1번이 특별한 사유가 된다면 별도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, 그 확인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3. 위 1번이 특별한 사유가 안 된다면 특별한 사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.

[ 접수번호 : 5465 ]

1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【별표6의4】의 3호의 ‘가’에서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1회 실시하되, 공사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 2제1호 및 제2호 중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

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방문지도를 월 2회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,

-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같은 호 '다'에 의거하여 공사의 조기준공,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지도횟수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(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)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.

■■■■ Question    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62조에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·준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중량물로 분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 (무게 기준 또는 부피 기준)      [ 접수번호 : 5464 ]

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62조(작업계획의 작성)의 중량물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기준이 없으며, 분류 기준은 중량물의 무게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9조(중량물의 제한) 및 제152조(작업자세 등)에 의거 근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무게는 근로자의 연령 및 성별, 작업빈도, 운반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자근로자의 경우 25kg, 여자근로자의 경우 15kg 이상의 물체를 말하며, 중량물 5kg 이상의 물체를 들어 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■■■■ Question      현장내 지면이 진흙성분이 많아 안전화에 묻은 상태에서 이동하게 될 경우 전도의 위험성이 다소 있어 안전화 세척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. 안전화 세척기 구입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
[ 접수번호 : 5464 ]

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, 귀 질의 안전화 세척기(털이개, 세균살균기 등 포함)는 현장내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화의 청결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근로자의 건설재해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고 보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,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 

※ 출처 : 노동부(www.molab.go.kr) 전자민원창구